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(044-203-5750), 임미정 사무관(203-5752)

한 · 뉴질랜드 FTA 의의 및 주요내용

1. 한 · 뉴질랜드 FTA 의의

□ '09.6월 협상을 개시한 한·뉴질랜드 FTA는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, 금년 중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달성함

* '09.6월～'10.5월간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, '14.2월 공식협상이 재개되어 금년중 5차례 공식협상 및 2차례 비공식협상 진행

- '14년 공식협상: 제5차(2월, 웰링턴), 제6차(3월, 서울), 제7차(6월, 오클랜드), 제8차(8월, 서울), 제9차(10월, 서울)
- '14년 비공식협상: 회기간협상(4월, 인니), 회기간협상(9월, 오클랜드)

○ 양측은 지난 제9차 공식협상에서 잔여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한 후 실무적 협의를 지속하여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하였으며, 11.15(토) G20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한·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선언

□ 한·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, 이로서 영연방 3개국(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)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.45%*로 확대하였음

* 우리나라(1.74%)+기체결 14개 FTA 상대국 GDP(71.71%)비중('13년 세계은행)

○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위 '선진국 클럽'인 OECD 회원국(34개국) 대부분과 FTA를 체결

* OECD 34개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, 멕시코, 이스라엘 등 3개국

□ 우리나라는 승용차, 철강, 기계 등 공산품을, 뉴질랜드는 목재, 낙농품,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바,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

* 2013년 기준,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무역파트너(수출 44위, 수입 41위)
- (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) ①휘발유, ②승용차, ③경유, ④건설중장비, ⑤합성수지
- (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) ①원목, ②낙농품, ③기타석유화학품, ④알루미늄괴, ⑤육류

** 2013년 기준,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제61위 투자대상(4.2억불, 누적)이며, 우리나라에 대한 제48위 투자주체(7천만불, 누적)

○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불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기계류, 자동차,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
* 1인당 GDP('13년, IMF기준) : 뉴질랜드 21위(40,516불) vs. 한국 29위(25,975불)

**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품목('13년 기준) : ①천연가스, 석유(67.2억불), ②기계류(49.6억불), ③자동차(47.8억불), ④전기제품(31.2억불), ⑤플라스틱(14.8억불)

○ 뉴질랜드가 그간 다수의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,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

*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이전에 중국, 호주, 아세안, 홍콩, 대만, 칠레 등 15개국과 총 9개의 FTA를 체결

□ 농림수산분야에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제도적 틀을 도입하여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 FTA 혜택을 보다 널리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

*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,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,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

□ 이 외에도, 현재 운영중인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선(쿼터 확대 및 조건 완화)과 비자쿼터 확보를 통해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

* 워킹홀리데이(1,800명→3,000명), 일시고용입국(200명), 농축수산업훈련비자(50명)

2. 한 ·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

□ 한·뉴질랜드 FTA는 상품, 서비스·투자, 규범(원산지, 통관, 정부조달 등) 뿐만 아니라, 농림수산분야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임

○ 한·뉴질랜드 FTA를 통해 농림수산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

□ **(상품)** 뉴질랜드측은 7년 이내에 전품목을, 우리측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

* (뉴질랜드) 수입액 기준 92%를 즉시, 전품목 7년 내 관세철폐
(우리나라) 수입액 기준 48.3%를 즉시, 96.4%를 15년 내 관세철폐

○ **(타이어, 자동차부품)** 타이어(관세 5~12.5%)는 즉시 관세철폐, 자동차 부품(5%)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마련

* 뉴질랜드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

○ **(기계·전자)** 우리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,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확대도 기대

* 세탁기(5%) 즉시철폐, 냉장고(5%), 건설중장비(5%)는 3년 관세철폐

○ **(중소기업 혜택 분야)** 농기계, 농부자재,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, 소형잡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**(농림수산물)** 우리는 쌀, 천연꿀, 사과·배 등 과실, 고추,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(품목수 199개)하고,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

*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, 계절관세, 저율관세할당(TRQ),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

□ **(서비스·투자)**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시장을 개방하되,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하는 한편, 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*하여 규정

*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, 한·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

□ **(원산지)**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

□ **(정부조달)** WTO 정부조달협정(GPA)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(BOT 포함)을 상호개방

* 뉴질랜드는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, 한국과 FTA에서는 포함하여 개방

※ BOT(Build-Operate-Transfer):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

□ **(인력이동)**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조건완화,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

○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는 현행 1,8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, 어학·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, 고용기간 제한도 완화*하여 여건을 개선

※ 워킹홀리데이란? ☞ 만 18~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, 어학연수,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* 동일한 고용주하에서 3개월 이상 근무 금지 요건을 폐지(영구취업만 금지)하여 뉴질랜드 현지업체에서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

○ 일시고용입국(총 200명)과 농축수산업훈련비자(연간 50명)를 확보하여 우리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

※ 일시고용입국이란? ☞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

* 한·뉴질랜드 FTA에 따른 일시고용입국 인정 분야
- (한국인특정직업) 한국어강사, 태권도강사, 한국인 가이드, 한의사 등 4종
- (전문직종) 멀티미디어 디자이너, 생명공학자, 산림과학자, 식품과학자, 수의사,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

※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? ☞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

□ **(협력)**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을 약속하고,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수산업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(비용은 양국 공동 부담)

○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(연간 150명, 8주 간)하는 교류 사업 추진에 합의

○ 우리나라 농림수산분야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훈련 및 연구, 뉴질랜드에서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도 추진

□ **(시청각공동제작)**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*을 부여함으로써, 향후 우리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 프로그램 등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

*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, 국제배급 지원, 세제혜택 등

참고 1. 한 · 뉴질랜드 FTA 주요 협상경과
2. 한 · 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
3. 한 · 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
4. 한 · 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
5. 한 · 뉴질랜드 교역 · 투자 현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(☎ 044-203-57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한 · 뉴질랜드 FTA 주요 협상경과

□ '09.1월 한 · 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

□ '09.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'10.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

* 제1차('09.6월), 제2차('09.9월), 제3차('09.12월), 제4차('10.5월)

○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

□ '13.7월 한 · 뉴질랜드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

□ '13.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 · 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

○ 한 · 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

□ '13.11월 한 · 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

□ '13.12월 한 · 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 · 뉴질랜드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

□ '14.2월 제5차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,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, 2차례 비공식협상 개최

* **공식협상**: 제5차('14.2월), 제6차('14.3월), 제7차('14.6월), 제8차('14.8월), 제9차('14.10월)
* **비공식 협상**: 회기간 협상 2회 ('14.4월, '14.9월)

○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

□ '14.11.15일 G20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한 · 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참고2 한 · 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

1 상품 양허

□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**7년 이내,**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**15년 이내**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**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**에 합의

○ **(뉴질랜드측)** 뉴측은 대한 수입의 92%(수입액 기준)를 즉시, 96.5% 3년 내, 97.6% 5년 내, 100% 7년 내 관세철폐

○ **(우리측)** 우리측은 對뉴질랜드 수입의 48.3%(수입액 기준)를 즉시, 61.8% 5년 내, 78.3%를 10년 내, 96.4%를 15년 내 관세철폐

□ **(뉴질랜드측 시장개방)**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**타이어**(관세 5~12.5%)/**세탁기**(5%) **즉시**, **냉장고**(5%)/**건설중장비**(5%) **3년**, **자동차부품**(5%) 대부분 **3년 내**, **철강제품**(5%) 대부분 **5년 내** 관세철폐 확보

* 우리 주력 수출품 중 승용차, 석유제품, 무선전화기, 칼라TV 등은 이미 무관세

○ 한편, 뉴-태 CEP 발효('05년)로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버스·트럭·특장차 등 **상용차**(0~5%)에 대해 **3년내 철폐** 확보로 수출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확보

○ **섬유** 관련,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에 대해 **7년 이내 철폐**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섬유의 뉴질랜드 시장 잠식 견제

* 뉴측의 對中 양허수준보다 對韓 양허수준이 대부분 1~4년 관세철폐 기간 단축

□ **(우리측 시장개방)** 우리측은 **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**하여 △양허제외, △농산물 세이프가드, △계절관세, △저율관세할당, △부분관세감축, △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**예외적 수단을 확보**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

○ 특히, 쌀·천연꿀·과실(사과·배·감 등)·고추·마늘·녹각·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,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

*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(ASG)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

* 탈전지분유·치즈·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(TRQ) 부여

2 원산지

□ **(품목별 원산지기준)**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

○ **(농수산물)**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민감성을 보호

○ **(승용차)**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(집적법 30%/공제법 40%)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

○ **(섬유·의류)** 한·미 FTA(원사기준)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(세번변경기준, 일부는 염색·날염공정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인정)

□ **(개성공단)** 한·미, 한·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

3 무역구제

□ **(세이프가드)** 한·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, 양자세이프가드 도입

○ 별도로 쇠고기 8개 세번(신선/냉장/냉동)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(ASG) 도입

□ **(반덤핑/상계관세)** 반덤핑관세 '최소부과원칙*' 도입과 마진 산정시 '제로잉금지원칙' 적용 관행 확인, 약속(undertakings) 제도 활성화

* 최소부과원칙 :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

4 서비스 · 투자

□ **(시장개방)**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·투자 시장을 개방하되,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

□ **(협정문)** 내국민대우, 최혜국대우, 시장접근,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·투자보호 규범을 규정

○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절차(ISD) 도입하고,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 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

*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, 한·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

5 정부 조달

□ WTO 정부조달협정(GPA)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(BOT 포함)을 개방*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**

* 양국 모두 상품, 서비스는 13만 SDR(약 2.3억원) 이상, 건설시장은 500만 SDR(약 87억원) 이상으로 규정

**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(미발효)

○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*를 포함하지 않았으나, 한·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

* BOT(Build-Operate-Transfer):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

○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

6 인력 이동

□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조건 완화, 일시고용입국,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

○ **(워킹홀리데이)** 연간 쿼터를 3천명으로 확대(현재 1,800명)하고, 연수·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*을 완화

※ 워킹홀리데이란? ☞ 만 18~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, 어학연수,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* (연수·교육기간) 3개월→6개월 , (고용제한) 동일 직장에서 3개월→영구고용만 금지

○ **(일시고용입국)** 총 200명에 대하여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*는 뉴질랜드에 입국 보장

※ 일시고용입국이란? ☞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

* (한국인특정직업) 한국어강사, 태권도강사, 한국인 가이드, 한의사 등 4종
(전문직종) 멀티미디어 디자이너, 생명공학자, 산림과학자, 식품과학자, 수의사,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

○ **(농축수산업 훈련비자)**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

※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? ☞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

7 농림수산 협력

□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,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약속(비용은 공동 부담)

○ **(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)**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(총 8주간 시행)

○ **(농림수산 전문가 훈련)** 동물질병위험분석,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·훈련을 수행

○ **(대학원 장학금)** 수의과학, 수산,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금

8 시청각 공동제작

□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

○ 동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*을 부여함으로써, 향후 우리 시청각물의 對뉴질랜드 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

*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, 국제배급 지원, 세제혜택 등

참고3 한 · 뉴질랜드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

양허단계	우리 양허안				뉴질랜드 양허안			
	세번수	비중	수입액(천불)	비중	세번수	비중	수입액(천불)	비중
즉시철폐	9,092	**76.5%**	568,606	**48.3%**	6,220	**85.7%**	850,163	**92.0%**
무관세	1,932	16.3%	459,555	39.1%	4,207	58.0%	698,395	75.6%
유관세	7,160	60.3%	109,051	9.3%	2,013	27.7%	151,768	16.4%
3년철폐	960	8.1%	141,362	12.0%	488	6.7%	41,138	4.5%
5년철폐	394	3.3%	17,222	1.5%	275	3.8%	10,685	1.2%
6년철폐	1	0.0%	53,982	4.6%	–	–	–	–
7년철폐	348	2.9%	113,407	9.6%	273	3.8%	22,106	2.4%
7년 이내	10,795	90.9%	894,579	76.0%	7,256	**100.0%**	924,092	**100.0%**
10년철폐	364	3.1%	26,297	2.2%				
10년 이내	11,159	**93.9%**	920,876	**78.3%**				
12년철폐	72	0.6%	36,351	3.1%				
13년철폐	2	0.0%	18,780	1.6%				
15년철폐	356	3.0%	158,014	13.4%				
15년 이내	11,589	**97.5%**	1,134,020	**96.4%**				
15년 초과	66	0.6%	1,264	0.1%				
계절관세/세번분리	3	0.0%	21,442	1.8%				
관세부분감축	12	0.1%	628	0.1%				
현행관세(TRQ)	12	**0.1%**	17,043	**1.4%**				
양허제외	199	**1.7%**	2,039	**0.2%**				
총계(기타 제외)	**11,881**	**100.0%**	**1,176,437**	**100%**	**7,256**	**100.0%**	**924,092**	**100.0%**
기타*	–	–	–	–	32	0.4%	3,062	0.3%
총합계	11,881	100.0%	1,176,437	100%	7,288	100%	927,154	100%

* 기타 :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

참고4 한 · 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

우리 양허		양허단계	뉴질랜드 양허	
주요 품목	품목수		품목수	주요 품목
원목, 펄프, 나프타, 양모, 알루미늄스크랩, 동스크랩, 열연강판	1,932	**즉시철폐 (무관세)**	4,207	승용차, 칼라TV, 무선전화기, 원유, 제트유및등유
알루미늄괴, 양가죽, 단판, 변환기, 선박용부품, 변압기부품, 소가죽, 포도주, 고령토, 의약품, 치약, 양가죽, 경유, 액정디바이스, 양탄자, 식염, 천일염	7,160	**즉시철폐 (유관세)**	2,013	승용차용 타이어, 버스/화물차용 타이어, 세탁기, 축전지, 전선, 철강관, 아연도강판, 동조가공품, 밸브, 면류, 알루미늄조가공품, 빵, 커피류
메탄올, 알루미늄괴, 연괴, 버터, 기초화장품, 제재목, 펌프부품, 지게차, 주강, 소주, 혼합(통조림 등), 의류(브라우스, 드레스, 바지)	960	**3년 철폐**	488	화물자동차, 건설중장비, 냉장고, 자동차부품(여과기, 안전벨트, 제동장치), 기타플라스틱제품, 철강선/철강관, 모사, 냉연강판, 편직물, 편직제/직물제 의류
밀크알부민, 코코아조제품, 소시지, 토마토페이스트, 초코렛, 완두, 변환기, 밸브, 클로렐라, 알부민, 된장, 바닷가재, 어육, 수산가공품, 조개, 오징어	394	**5년 철폐**	275	철강선, 철강관, 중후판, 봉강, 선재, 도금강판, 연선 및 와이어, 편직물, 기타섬유제품, 기타신발
키위	1	**6년 철폐**	–	–
라디에타소나무, 카세인산염, 밸브, 맥주, 딸기, 과일쥬스, 커피, 물, 공기조절기, 뱀장어, 골뱅이, 마카로니, 자라, 어류(민어, 다랑어, 대구, 돔)	347	**7년 철폐**	273	자동차부품(방열기), 변압기, 모사, 편직물, 편직제/직물제 의류, 섬유판, 합판
치즈(기타/체다 치즈)	1	**7년 철폐 (TRQ)**	–	–
면양, 유당, 홍어, 애버카도우, 전갱이, 뱀장어, 코드카, 사슴고기, 아귀, 위스키	362	**10년 철폐**	–	–
버터	2	**10년 철폐 (TRQ)**	–	–
섬유판, 합판, 어류(명태, 가자미, 황새치, 참치, 대구, 갈치, 꽃게)	71	**12년 철폐**	–	–
치즈(신선/모차렐라 치즈)	1	**12년 철폐 (TRQ)**	–	–
냉동크림	1	**13년 철폐**	–	–
조제분유	1	**13년 철폐 (TRQ)**	–	–
쇠고기, 식용설육(소), 동물의 위, 장(소의 것), 요구르트, 녹용(기타), 호박, 필터담배, 마가린, 감자, 오이, 양파(냉동), 완두, 어류(황다랑어, 조기, 고등어, 민어, 대구)	347	**15년 철폐**	–	–
치즈, 조제식료품	9	**15년 철폐 (TRQ)**	–	–
크림, 조제분유, 조제식료품	3	**17년 철폐**	–	–
홍차, 로얄제리, 멜론, 포도, 버섯류, 닭고기(미절단/냉장), 오리고기, 상추, 마늘	57	**18년 철폐**	–	–
밀크와 크림, 합판	6	**20년 철폐**	–	–
호박(신선/냉장)	1	**계절관세**	–	–
녹용(전지)	1	**세번분리**	–	–
감자(기타)	1	**세번분리/계절관세**	–	–
옥수수, 보리가루, 옥수수가루, 기타곡분, 대두, 사료	12	**10년간 50% 감축**	–	–
탈전지분유, 연유, 홍합(자숙)	12	**현행관세 (TRQ)**	–	–
–	–	**기타***	32	항공기부품, 의류부속품, 건설중장비부품, 시계부품
쌀, 쌀보리, 천연꿀, 인조꿀, 닭고기(냉동), 돼지고기(삼겹살), 유당, 녹각, 단감,고추, 인삼, 마늘(신선,냉장,건조), 사과, 배, 포도, 감귤, 오징어(냉동), 전복, 명태(냉동)	199	**양허제외**	–	–
	11,881	**총합계**	7,288	

* 기타 : 품목이 사용되는 최종재의 양허에 따라 관세율 및 양허단계 결정

참고5 한 · 뉴질랜드 교역 · 투자 현황

□ 교 역

《단위 : 백만불, ()는 증감률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》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수 출	673 (0.4)	699 (3.9)	825 (18.0)	891 (8.0)	918 (3.1)	1,104 (20.2)	1,465 (32.7)	1,491 (1.8)
수 입	967 (8.6)	1,171 (21.1)	1,122 (△4.2)	879 (△21.6)	1,176 (33.7)	1,474 (25.4)	1,339 (△9.2)	1,395 (4.1)
무역수지	-294	-472	-297	12	-258	-370	126	97
총교역액	**1,640**	**1,870**	**1,947**	**1,770**	**2,094**	**2,578**	**2,804**	**2,886**

※ '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교역파트너 (수출 44위, 수입 41위)

□ 투 자

《단위 : 천불, ()는 신고건수 / 자료출처: 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수출입은행》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누 계 (~'13)
뉴질랜드의 대 한 국 투 자	168 (3)	471 (5)	57 (1)	340 (4)	30,718 (7)	359 (4)	458 (5)	495 (3)	[illegible] (87)
한 국 의 대뉴질랜드 투 자	21,544 (28)	38,213 (34)	15,801 (27)	13,480 (13)	14,781 (20)	48,835 (22)	23,255 (16)	13,37[illegible] (2[illegible]	[illegible] ([illegible]

※ '13년 누적 신고금액 기준 뉴질랜드는 대한국 제48위 투자주체, 한국의 제61위 투자대상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한국의 對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 현황(2013년)

《MTI 4단위 / 자료출처: 한국무역협회, 관세청》

수출품목	관세율(%)	금액(백만불)	비중(%)	수입품목	관세율(%)	금액(백만불)	비중(%)
휘발유	0-5	420	28.2	원목	0	347	24.9
승용차	0	246	16.5	낙농품	8-176	172	12.3
경유	0-5	225	15.1	기타석유화학제품	2-8	169	12.1
건설중장비	0-5	59	4.0	알루미늄괴 및 스크랩	0-3	118	8.5
합성수지	0-5	50	3.4	가축육류	3-72	117	8.4
기타어류	0	26	1.7	펄프	0	61	4.4
석도강판	0	25	1.7	제재목	5	44	3.2
화물자동차	0-5	24	1.6	단백질류	8-20	37	2.7
인쇄용지	0	22	1.5	과실류	5-612	35	2.5
타이어	0-5	21	1.4	고철	0	22	1.6
소 계		**1,118**	**75.1**	**소 계**		**1,122**	**80.6**
전 체		**1,491**	**100**	**전 체**		**1,395**	**100**

※ 우리 휘발유·경유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미 무관세(0%) 적용중

※ MTI4단위를 HS4단위와 연계하여 관세율 계산